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90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진선미・김한규・강유정

강훈식 • 박정현 • 모경종

김영환 • 박민규 • 백승아

이재관 • 위성락 • 문정복

신장식 · 김우영 · 김성환

이재강 • 고민정 • 이용우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 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계엄(戒嚴)의 선포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있다. 다만, 이 경우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은 계엄 해제에 관한 안건에 한정한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계엄(戒嚴)의 선포로 인하여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논의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논의할수 있는 안건은 계엄 해제에관한 안건에 한정한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합의하여 제1항에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